해외선물옵션 실시간 시세정보 이용약관

제정 2019.12.27
개정 2022.09.14
개정 2025.07.10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선물㈜(이하 "회사"라 함)에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해외파생시장의 실시간 시세정보를 유료로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회사가 해외파생시장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정보제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정보의 내용은 해외파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시가 및 종가, 고가 저가, 정산가, 매도/매수호가, 체결가, 차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및 데이터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복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의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이용료)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서비스이용료(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 및 예탁금이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고객은 해당월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이하 "신청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단위는 매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소로 전달되며, 해당 **해외거**

래소의이용료과금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 개시시점이 해당월 1일이 아니거나 종료시점이 월말이 아닌 경우라도 서비스이용료는 1개월로 계산하며 중도해지 시 당월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서비스이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⑤ 회사가 이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약관의 변경 등)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저작권)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및 관련 협력사에 있으며, 고객은 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해킹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하여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조정)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관할법원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관계법규등 준용)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